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7 - 14 - 090호

안 건 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사실조사 거부)

피 심 인

--

의결연월일 2017. 3. 21.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배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16. 1. 1. ~ 6. 30.)에 대한 사실조사('16. 6. 1. ~ 7. 15.)를 실시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점

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주)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16. 6. 1. ~ 7. 15.) 중, 판매점인 []이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서 대규모 가입자를 유인·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이 '16. 7. 13. 오후 2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소재 []에서 조사 목적·범위·내용 및 조사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에 대해 조사(이하 '현장사실조사'라고 한다)를 시작하려고 하자,

피심인은 직원들에게 개인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에게는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컴퓨터 모니터·키보드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탁상용 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조사관을 주거침입 및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이에, 조사관은 결국 현장사실조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피심인을 공무 집행방해로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심인은 2017. 1.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조사관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은 (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ii) 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관한 현장사실조사에 대해 2.의 가.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며 현장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 제2호 너목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 일어난 것으로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	500	1,500	3,000	5,000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에게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조사를 거부·방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 원

김 석 진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